



202.4호

행정명령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2020년 3월 7일에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COVID-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러므로, 이제, 행정부법(Executive Law) 2-B조의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재난 비상 상황에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에 의거,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4월 15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발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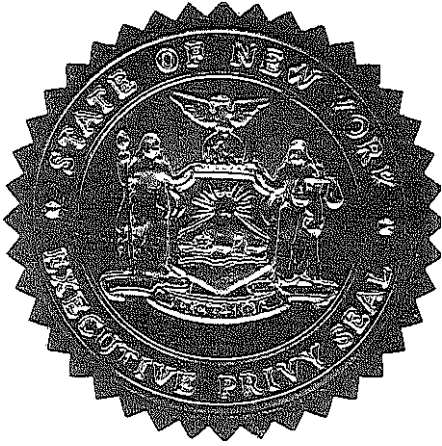
- 모든 지방 정부 또는 산하 정부 기관은 2020년 3월 17일부터 COVID-19 비상사태에 대한 지역의 대응에 필수적인 인력을 제외하고 지방 정부가 결정한 비필수 인력에게 발생액을 청구하지 않고 재택근무나 휴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비필수 인력은 해당 지방 정부 또는 산하 정부의 전체 인력에 걸쳐 총 직원 수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서비스가 필수적이지 않거나 COVID-19 대응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주 근로자의 출근에 대한 제한은 뉴욕주의 모든 카운티로 확대됩니다.
- 이전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뉴욕주의 모든 학교는 늦어도 2020년 3월 18일 수요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2주간 폐쇄하도록 지시합니다. 주 정부는 이 날짜를 초과하여 폐쇄를 연장할지 여부를 해당 시점에 재평가해야 하며 180일 교육 요건을 계속 중지할 수 있습니다. 180일 중지는 주의 허용 폐쇄 지침에 따라 조정됩니다. 기간을 초과하는 학교는 180일 규정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특히 대응 노력에 중요한 의료 전문직 또는 응급요원의 자녀를 위한 대체 교육 방법, 급식 제공 및 가용성, 보육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아동 및 가정 서비스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과의 상의 후 이를 언제든지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 서퍽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및 뉴욕시의 교육구는 2020년 3월 17일 자정까지 해당 계획을 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20년 3월 17일에 개최되는 모든 빌리지 선거를 연기하고, 해당 직위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새로운 선거가 시행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합니다.

2020년 3월 16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해서 선포함.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Andrew Cuomo".

주지사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Mr. C".

주지사 비서